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5호선 둔촌동역 -

의안 번호	550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 도시계획시설(철도: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길동~마천)	강동구 길동 379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일대	-	7,500	-	1991.04.01. (건고 제1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구 2개소 이설 (증 334㎡) • 도로, 공공공지, 문화 및 복지시설 중복결정
변경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길동~마천)	강동구 길동 379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일대	-	7,500	-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둔촌동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416일대	5,846	증) 393	6,239	1991.04.01. (건고 제1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3개소 이설 (증 393㎡) • 도로, 공공공지, 공원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부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철도	도시철도 5호선 (환기구)	강동구 둔촌동 170-1앞	475	감) 475	-	1993.07.31 (서고제226호)	• 환기구(2개소) 이설에 따른 시설 폐지 (감 638㎡)
폐지	철도	도시철도 5호선 (환기구)	강동구 둔촌동 170-1앞	163	감) 163	-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철 도 (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구(2개소) 본선 편입 및 이설: 증 334㎡ ①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감 58㎡ ② 환기구 이설: 증 141㎡ ③ 환기구 본선 편입: 증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양재대로 차선 확장을 위해 기존 보도에 설치된 1번,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5개소 이설
철 도 (정 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 2번 출입구 및 환기구(3개소) 이설: 증 393㎡ ①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감 156㎡ ②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증 549㎡ ※ 전체면적 대비 23.3% 변경 	
철 도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구(2개소) 폐지: 감 638㎡ 	

3. 입안사유

-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양재대로) 확장으로 5호선 둔촌동역 출입구 이설(1,2번), 환기구 5개소 이설 (본선2개, 정거장3개) 및 폐지(2개소)하고,
- 둔촌동역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선 현행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 타 : 도로, 철도, 공공공지

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열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22. 7. 14. ~ 2022. 7. 28.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강동구 도시계획과

[재열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22. 10. 20. ~ 2022. 11. 3.
- 게재신문 : 문화일보, 내일신문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강동구 도시계획과

6.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 일시 : 2022. 12. 2.
- 결과 : 원안가결

7.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시 : 2022. 12. 19.
- 결과 : 원안동의

8. 환경성 검토

-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양재대로)상 지하철 출입구(1, 2번)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지형변동이 미미한 여건이며, 공사 시 주변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조치 시행하겠음

9.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 :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사업시행자) 자체조달
- 총 사업비 : 15,65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사업비	15,650	7,825	7,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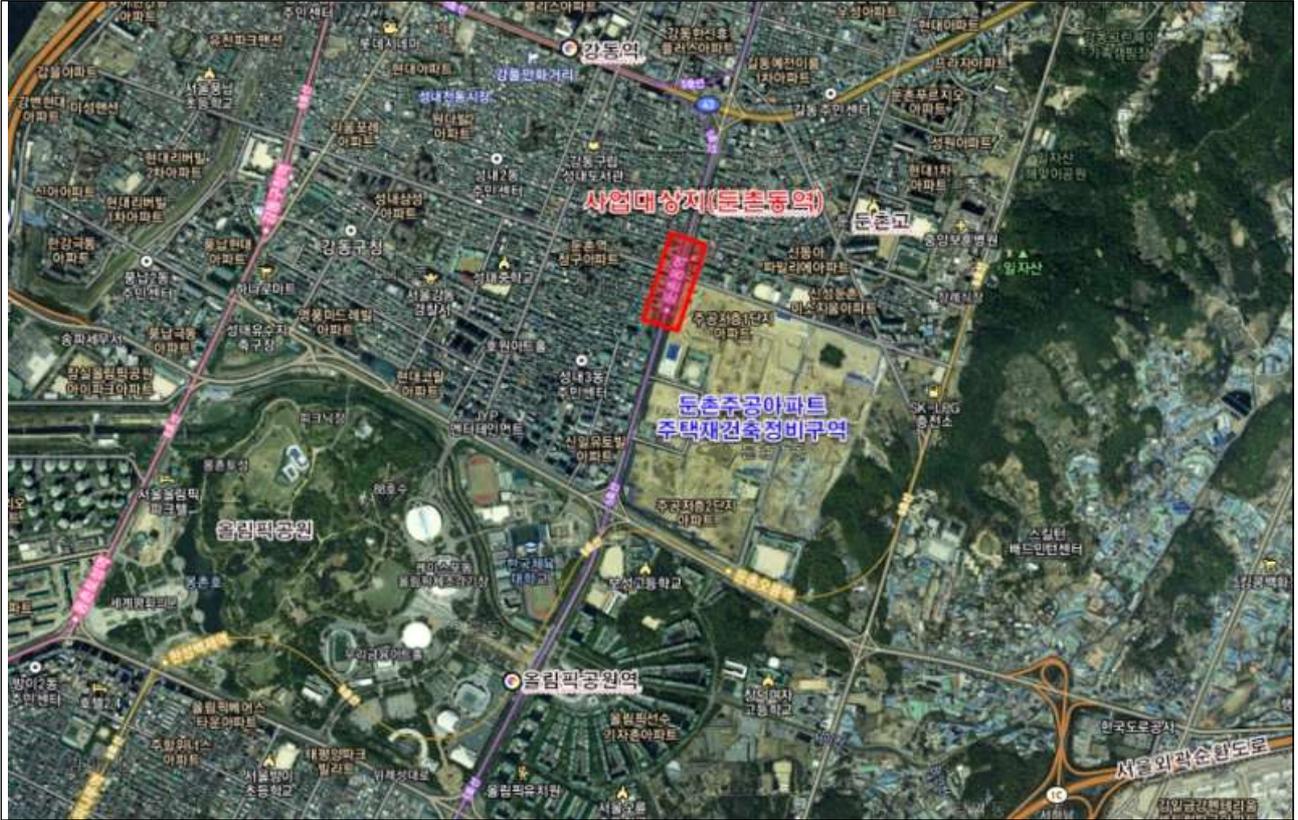
○ 추진경위

- '06.11. 2. : 둔촌주공이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372호)
- '14.10.14. : 제14차 市 건축·교통 통합위원회심의 완료
※ 양재대로에서 풍성로 한산중학교 방면의 우회전 구간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 '15. 1.22.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호)
※ 양재대로 일부 확장(기존: 폭원 50m → 변경: 폭원 50m~53m)
- '15. 8. 5.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강동구고시 제93호)
- '17. 5. 2.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고시 제68호)
- '18. 9.18. : 제21차 市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완료
※ 자전거도로 설치 신설 및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이설 계획 반영
- '19.12. 3. : 착공신고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부.
3. 주민(재)열람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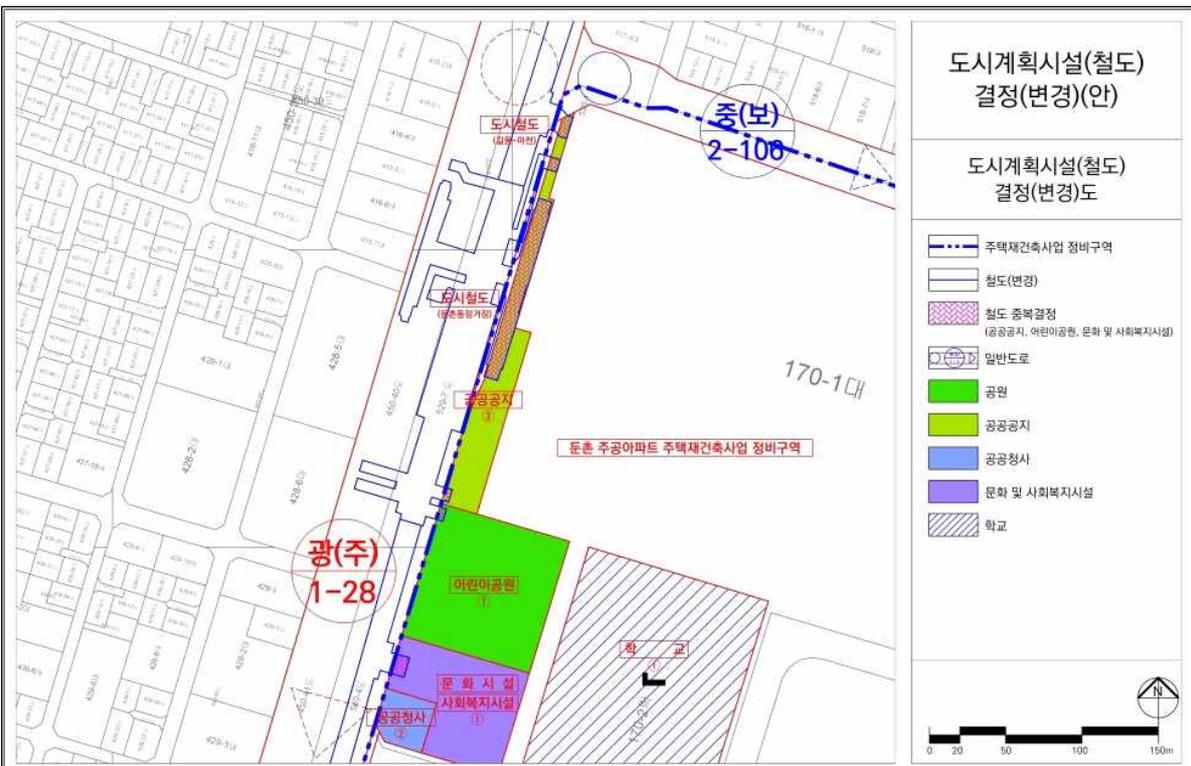


붙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안)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붙임 3 주민(재)열람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1.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 강동구 푸른도시과 보완사항 조치계획(22.07.21.)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푸른 도시과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제1호 어린이공원) 내 철도 중복 결정 사항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에 반영되어 고시된 사항으로 중복결정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 없음	-	-
	○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환기구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환기구를 성토·덩굴류 차폐식재·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 부정적인 시각 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안)에 대한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야 함	○ 환기구가 설치되는 위치가 공원 등에 위치되므로 주변 경관과 위해 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과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 서울시 시설계획과 보완사항 조치계획(22.07.29.)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시설 계획과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작성 관련 최초 결정일 수정 - 본선(길동~마천), 둔촌동정거장 : 건설부 고시 제151호(91.4.1.) - 환기구(2개소):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6호 (93.7.31.)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에서 최초 결정일을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음	반영
	○ 변경결정 사유서의 변경 내용(면적 증감 사항) 수정 - 본 선: 폐지되는 환기구(2개소)의 기정 조서 면적을 그대로 본선 면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되는 환기구의 실제 증가 면적으로 작성 - 정거장: 증가면적 255㎡는 1번,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외 기존 정거장의 현황 측량성과 결과도 반영된 사항 이므로 증감 면적을 세분하여 작성	○ 본선에 편입되는 환기구(2개소)의 면적은 실제 증가 면적(cad구적)으로 조정 ○ 정거장의 변경결정 사유서에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과 환기구 및 출입구 이설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을 세분화 하여 명시하였음	반영

○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1차(22.07.28.)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토목	○ #5361 환기구 이설계획 평면도에 의하면 수평 풍도가 꺾여진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계획 시 모든 구조물 이설 구간은 공공공지 부지 내로 이설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5361 환기구를 직선화할 경우 공공공지 부지 외로 배치가 불가피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노상시설의 금지 지역 규정에 어긋남. ○ 또한, 이설 환기구 계획에 대한 정압 검토 결과 풍도 유지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시 풍량 및 정압 상태 확인을 위한 기술검토서 제출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미반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12.31.)」에 따라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은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5m (보호폭)씩 추가 확보하여 결정되어야 함	○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5m(보호폭)를 추가 확보한 면적을 재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하겠음	반영
	○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간 설치토록 계획된 연결통로는 건물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용통로'로써 "서울특별시 행정 2부시장 방침 제232호('18.10.25.) 「지하 연결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철도' 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함	○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철도)~대지경계] 연결 통로에 대해서는 강동구청과 정비계획 결정(변경) 등의 절차를 협의 및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첨두시간대 수요예측 및 서비스 수준(혼잡도) 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성,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 및 출입구 통로의 위치, 규모, 동선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의 '2.2.3 서비스 수준'에 근거하여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 수준검토서를 작성하였음.	반영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시설 설치의 적정 규모 검토를 위한 서비스 수준 분석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 2번 출입구 내 설치되는 승강시설(E/S, E/L, 계단)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하여 향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서비스수준 분석 보고서 제출 → 관련근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의 '2.2.3 서비스 수준'에 근거하여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수준 검토서를 작성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시설 및 연결통로 간 최소 여유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 2번 출입구 내 승강시설(E/S, E/L)와 연결통로 간 최소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지상 엘리베이터 부근 혼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근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의 '제3장 정거장 내 시설'에 근거하여 구조물을 계획하였으며,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수준검토서에 관련기준 및 대기공간 서비스 분석 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지상 구간은 공공공지이며 폭 7.5m로 계획되어 있어 혼잡 발생 우려 없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출입구 및 승강시설 등 설치 관련 법적 충족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및 승강시설 등 설치 관련한 법적 충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설계 성과물에 반영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2.1.3 친환경성 (1) 실내온도, 습도 등에 대하여 적절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한다.」에 따른 개량 또는 신설 기계시설물에 대한 설계 검토 및 반영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철도시설물의 기계시설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의 '2.1.3 친환경성'에 근거하여 신설 기계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검토한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이설에 따른 통로 등 변경된 구역에 환기 장비 설치 검토 요함. (기존 대합실 환기설비 용량 증설 활용 또는 신설 환기 장비 설치에 따른 용량, 배치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출입구 환기설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된 구역에 대한 환기설비 용량증설활용 및 신설 환기 장비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한파에 따른 동파 방지 설비 적용 필요성 검토 및 설치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인가 시 동파 방지 설비(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열선 반영 등) 필요성 검토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구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내 역사 환기설비 운영 및 화재 시 제연(연기 배출) 동작 등 필수 기능 유지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이설공사 기간 환기 기능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 계획도를(신설구조물 선시공 후 기존 구조물 철거, 환기설비 연결은 영업 종료 후 시행) 작성하겠으며, 시공 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반영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기계	○ 환기구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내 예비환기구 확보	○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이설공사 기간 환기기능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도를(신설구조물 선시공 후 기존구조물 철거, 환기설비 연결은 영업종료 후 시행) 작성하겠으며, 시공 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반영
	○ 공사 시 분진 발생에 따른 기계시설물 오염방지 및 역사 내 분진 유입 방지 방안 필요	○ 기계시설물 오염방지 및 역사 내 분진 유입 방지를 위해 공사 전 칸막이를 설치하겠으며, 필요 시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 설치하겠음	반영
	○ 관련 법규(화재안전 기준 등)에 적합한 소방시설물 설치 • 자연 설비 적용 사전 협의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필수	○ 실시계획 인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 신설 출입구측에서 역사로의 우수 유입에 따른 우수처리 방안으로 자연배수 방식 적용	○ 신설 출입구 상부에 케노피를 설치하여 역사로의 우수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유입되는 우수는 자연 배수 방식으로 반영하겠음	반영
	○ 역사 및 본선 신설 환기구 면적을 기존 환기구보다 축소하지 말 것	○ 이설되는 환기구 면적은 기존 환기구 면적 이상을 확보하겠음	반영
	○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오물방지망 제작 설치 시 사전 협의	○ 실시계획 인가 시 이설되는 역사 및 본선환기구 오물방지망은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에 근거하여 계획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출입용 원형사다리 설치	○ 실시계획 인가 시 본선 환기구 출입용 사다리는 원형사다리를 적용하겠음	반영
	○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이설 시 환기구 풍도 길이 연장 및 굴곡개소 추가 등으로 인해 공기저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송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적정 풍량 및 정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AB 기술검토서 제출	○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풍도 길이 연장 및 굴곡개소 추가 등으로 인한 마찰손실을 검토하여 기존 송풍기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 승강기 제작 설치 시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제작 설치	○ 승강기 제작·설치 시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제작·설치하겠으며, 제작 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2차(22.09.20.)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토목	○ #1번 출입구는 현재 재건축사업과 상관없는 둔촌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1번, #2번 출입구 동시 폐쇄 시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시공순서 검토, 이설 위치 조정 등)	○ 기존 출입구 동시 폐쇄 대안으로 연결 통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설 통로 폭을 기존 통로 폭에 이격하여 이설 #1, #2 출입구를 선시공한 후 기존#1 출입구 철거하는 방안으로 둔촌2동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에 대해 보완 제출 필요(향후 연결통로 협약 체결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체와 협의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요망)	○ 서울시 및 강동구 협의 결과 도시계획 시설 철도와 사유건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는 「자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10.)」에 따라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며, 추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은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5m(보호폭)씩 추가 확보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면적 증가내용을 조서에 포함하여 제출 바람	○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물로부터 0.5m(보호폭)를 이격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선형을 계획함	반영
	○ '22.08.01. 실시한 둔촌동역 출입구 보행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출입구(#1~#4)의 공사 전 및 공사 중 서비스 수준을 "A"로 분석하였으나, 동 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 주민의 이주시기가 '17.7월~'18.1월임을 고려할 때 "공사 전 서비스 분석"은 이주 시작 전 보행량을 반영하여 재 분석 필요함	○ 아파트 이주 전 보행량 분석을 위해 서울 교통공사 연도별 승·하차 실적 5년간 (2012년~ 2016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3년에 가장 많은 승·하차 실적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이주 시작 전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1번, #2번 출입구 모두 "B"로 검토되었음. #3번, #4번 출입구는 현재상태와 동일한 조건이므로 22년 8월 1일 실시한 보행량 조사결과를 반영한 "A"로 분석됨	반영
	○ 공사 완료 후 서비스 수준 분석 시 "2021년 둔촌동역 승·하차인원"을 적용한 시간대별 승·하차 발생비율을 산정하여 각 출입구별 이용인구를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의 이주 시작 전 ('17.7월 이전) 둔촌동역 승·하차 인원을 반영하여 공사 후 출입구별 장래 이용인구를 예측 분석이 필요함	○ 아파트 주민 이주 시작 전 둔촌동역 승·하차 인원을 반영하고 향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순수 증가된 이용인구를 예측하여 서비스 수준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현재 검토된 보행량보다 적은 것으로 검토됨	반영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토목	○ 1번 및 2번 출입구와 대합실 간 통로의 공사후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가 “D”로써 「도시철도 정거장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기준(“D” 이상)에는 부합하나, 동 재건축사업으로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약 6천 세대→12천 세대)됨에 따라 철두시간대 혼잡도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통로 폭(7m)을 확장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통로 폭 검토 시 이용 가능한 1번, 2번 출입구 및 상가 연결통로에서 유입되는 각 최대치 합산인원을 가장 불리하게 적용된 결과이며, 「도시철도 정거장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서는 6m이상,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폭을 충족하므로 기존 통로 폭(7m)을 유지하겠으며 혼잡도 완화를 위해 통로 폭 위치를 변경하겠음	반영
건축	○ 연결통로 합류구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혼잡시간 대 출입구,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의 이용객으로 인한 역사 내 혼잡이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연결통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통로 폭은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폭을 충족하는 순폭(7m)을 적용하겠음.	반영
	○ 기타 건축분야 세부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면 등 관련 도면 제출 시 검토 가능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기타 건축분야 세부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정보통신	○ 연결통로 설치구간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토록 교통공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송장치 스피커는 물론 건물 방재실과 교통공사가 연결통로 상시 감시가 가능토록 감시카메라 구축 필요	○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비상 방송 및 감시카메라 등을 성과품에 반영하겠음	반영

○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3차(22.10.05.)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 교통 공사	○ 동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주관하에 설계, 공사(감리 등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설계 및 공사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주관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 등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 하겠으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설계 및 공사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겠음	반영
	○ 동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공사와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공사 관련 서류(지하철 구조물 안전성 평가보고서, 구조물 설계도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서, 지반 조사 보고서,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서)가 제출되어 협의의 거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함	○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 전 공사 관련서류(지하철 구조물 안전성 평가 보고서, 구조물 설계도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서, 지반조사 보고서, 철도보호 지구행위신고서) 제출 및 협의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 동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 주관 으로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재 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서비스 수 준 분석오류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규모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민원 이나 서비스 수준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규모 변경 등이 필요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하겠음	반영
	○ 아울러, 동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시, 기 회신드린 붙임2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세부도면이 우리공사에 제출되어 협의(협약체결 포함) 후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시, 기 수신한 검토 의견 (1차: 토목차-5399(22.07.28), 2차: 토목차-6583(22.09.20))이 반영된 세부 도면을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2. 주민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 서울시 보완사항 조치계획 (22.10.20.)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상업 기획과	<p>○ 기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2,385.7㎡) 중 급회 도시계획시설(철도) 중복결정(6개소: 지상 269㎡, 지하 632㎡)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1조 상 공공공지의 '정의' 및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정조서 상 지하 조성깊이 등 구체적인 중복결정 범위 명시 필요</p>	<p>○ 이설되는 출입구와 환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주변 경관에 위해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공지에 조성되는 보행로에서 지하철 출입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 공공공지 내 환기구3개소(본선 및 정거장 위치)와 출입구2개소(정거장 위치)가 이설되며 합산한 면적은 788㎡임. 도시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의 경우 철도(본선) 및 철도(정거장)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이에따른 환기구와 출입구 별도의 구체적인 폭원과 높이 등이 상세히 작성된 사업계획(안)을 첨부하여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음</p>	반영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수변감성 도시과	〈유출지하수〉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수자원법 9조의2 ①항 1호: 지하철·터널 등을 설치하려는 자 · 수자원법 시행규칙 15조 ②항 1호: 지하철역사 1개소 : 1일 300톤	반영
	○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 제9조의2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m ³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m ³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본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사업은 지하철·터널 설치가 아닌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정거장이나 터널구간처럼 지하수가 집수되어 유출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m ³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m ³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해 공사 중 가시설 설치 시 차수 그라우팅을 설치하여 지하수 유입을 1차 방지하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량을 확인하겠으며, 구조물 공사 시에는 줄눈실링 공법(신축줄눈) 및 슈트방수 공법을 적용하여 본 구조물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지하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음	
	○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지하수위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관측 및 관리를 시행하고 공사후에도 일정기간 지속 관측하도록 향후 도면에 명기하여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겠음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지하수위계(지표침하계)를 설치하여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하겠음	반영
	○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 지하수 관측공은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수변감성 도시과	<p>〈토양〉</p> <p>○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p>○ 본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둔촌동역과 둔촌재개발건축현장 사이에 존재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반영
	<p>○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p>	<p>○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겠음</p>	반영
	<p>〈물재이용〉</p> <p>○ 사업 시행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 본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사업은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p>	반영
	<p>○ 사업 시행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 또한, 물재이용법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항에 해당하지 않음</p>	반영
	<p>〈저영향개발(LID)〉</p> <p>○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성 검토서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p>○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식생대, 식생여과대, 투수포장 등)을 검토하겠음</p>	반영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수변감성 도시과	<p>〈 저영향개발(LID) 〉</p> <p>○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 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3779)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p>○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검토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하겠음</p>	반영
	<p>○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물순환정책과-7418 ('20.04.20.)호]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3779)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허가) 및 설치결과(사용승인)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p>○ 본 사업은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물순환정책과-7418 ('20.04.20.)호]의 녹색인프라 의무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p>	반영

구 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생활환경과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 소음·진동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소음에 민감한 학교·주거시설·병원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시설,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그 밖에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및 주거시설이 공사장에서 약 200m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해 도면에 반영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및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 · 공정별 공사물량(산출근거), 해당 공정의 소요 일수, 투입장비 및 소요대수(산출근거), 해당 장비의 동력, 장비별 소음도(인용자료), 합성 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산출식) 등 고려 · 저감대책에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소음 측정기, 전광판) 설치 포함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무상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링조사 결과 본 사업구간은 굴착 최하면은 풍화토로 구성되어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은 없으나, 가시설 공사 시에는 매입공법을 철거 시에는 다이아몬드 휠쏘 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지역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소음 측정기, 전광판) 설치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교통,철도, 공항소음 등)의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진동의 조사 및 평가 · 발생 소음원 종류(교통, 철도, 항공소음 등) 및 소음도 현황 조사 ⇒ 자치구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교통소음지도 적극 활용 · 주변 소음발생원에 따른 사업지구 층별 소음도 예측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2015)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실시계획 인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 수립(공사내용 미확정시 차후 대책수립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 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 속도 측정 등 소음·진동 영향 예측 · 정온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무진동 발파 공법 등 적용가능 공법 제시 · 정온시설의 특성에 따라 진동속도 기준 검토 · 현황 파악 결과에 따라 동 지역에 적합한 허용기준 설정 및 공사방법, 저감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링조사 결과 본 사업구간은 굴착 최하면이 풍화토로 구성되어 발파공정은 발생하지 않음 	반영